



Monica Wanat
Council Services
Monica.Wanat@rotary.org
Direct Dial: (847) 866-3466
Council Services Fax: (847) 556-2123
Council Services Fax: (847) 866-5507

2007 년 8 월

수신: 2007-08 지구총재

제목: 201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친애하는 로타리안 귀하:

귀하께서는 지구총재 임기 중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2010 규정심의회와 관련하여 2 가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귀 지구의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귀 지구의 입법안 제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들은 규정심의회가 개최되는 연도 2 년 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지구의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귀하의 총재 재임 기간 중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2010 규정심의회는 2010 년도 4 월 25-30 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날짜와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지구 내 모든 클럽들에게 지구 대표로 활동할 규정심의회 대의원 후보들을 추천해 주도록 통보하셔야 합니다. 대의원의 자격과 임무, 그리고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은 RI 세칙 제 8.010.1., 8.020., 8.030., 8.050., 8.060., 8.070., 그리고 8.080.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봉한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 선출 방법'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 규정심의회는 지구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조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지구 대의원은 지명위원회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구대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구대회 및 우편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거 규정도 일부 개정되었음을 주지해 주십시오. 즉,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대의원으로 결정한 후,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3698 USA
PH 847.866.3000
FAX 847.328.8554
www.rotary.org

교체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다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RI 웹사이트, www.rotary.org 에 올려진 RI 정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구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이 선출되면, 귀하께서는 동봉된 지구 대의원 증명서 양식을 통해 즉시 인준을 하셔야 합니다. 3 부로 되어 있는 이 양식에 서명한 후 첫 장은 RI 세계본부 규정심의회 부서로 우송해 주시거나 팩스(팩스번호: 847-866-2143)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대의원에게 전달하여, 2010 규정심의회 참석 시 이를 자격심사 위원회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장은 교체대의원에게 전달하여 대의원이 사정상 2010 규정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I 이사회는 로타리 정책 및 방침, 그리고 프로그램에 정통한 가장 적합한 로타리안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선호도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타리안을 선출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여, 단순히 지구총재를 역임했다는 사실보다는 심의회의 전체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체력이나 건강도 고려해 주십시오. 실제로, 대의원들의 규정심의회 업무는 많은 입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심의회의 모든 자료들은 한국어로 번역되며, 심의회 회의 전 과정 역시 한국어로 통역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듯이, 규정심의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로타리클럽은 매년 회원 1 인당 미화 1 달러의 추가 회비를 RI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I세칙, 제 17.030.2.항). 이 추가 회비는 대의원들의 여행 및 숙박비 등을 비롯해 규정심의회 개최에 따른 일상 경비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대의원의 배우자 및 가족들의 규정심의회 참가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규정심의회 관련 경비에 관한 정보를, 지구 로타리안들에게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은 2009-10 로타리 연수회에 참석하여 규정심의회에 관해 전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RI 가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로타리 연수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므로, 이 경비는 본인들이나 지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규정심의회와 관련된 귀하의 두 번째 책임은 귀 지구가 입법안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2007 규정심의회는 입법안 제출 마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구/클럽의 입법안은 지구 심의 승인 확인서와 함께 **2008년 12월 31일까지 RI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이 본 서신과 함께 동봉되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 사항,” “입법안 제안 방법,” 그리고 “대의원 증명서 양식” 등도 함께

동봉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식이나 정보는 모두 로타리 웹 사이트, www.rotary.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 주십시오.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에 대한 또 다른 안내문이 모든 지구로 우송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여 입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의원 선출이나 RI의 입법 절차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onica Wanat

Monica Wanat

동봉물